

# 2026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융합 프로젝트 후속지원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술인 맞춤형 기술역량 교육부터 예술실험까지 연결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 <수퍼 테스트베드 Super Testbed>와 뉴미디어, 사운드 분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<신규분야 개척지원 사업>을 운영하였습니다.

해당 사업의 후속지원으로 <2026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융합 프로젝트 후속지원> 공모를 진행합니다. 본 사업은 '23년-'25년 융합예술 테스트베드 참여 프로젝트 및 '24-'25년 신규분야 개척지원 사업(연구제작, 기술개발)을 통해 발굴된 프로토타입의 완작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참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.

## □ 공모개요

- (공모명) 2026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융합 프로젝트 후속지원
- (공모목적) '23 - '25년 참여자의 실험(프로토타입)을 후속지원하여 실험의 완결성을 제고하고, 예술기술 융합 작품의 국내외 유통 기회를 확장
- (공모기간) 공고일 ~ 2026. 2. 27.(금) 15:00까지
- (사업기간) 2026. 3. ~ 11. (9개월)
- (지원대상) 23-'25년 사업 참여자(<sup>①</sup>수퍼 테스트베드 지원, <sup>②</sup>신규분야 개척 지원)로 실험(프로토타입)의 완작 제작 및 유통이 가능한 예술가(팀, 단체)

### <지원대상 사업>

- 1) '23년-'25년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융합 <수퍼 테스트베드> 지원 사업 참여자  
\* 예비예술인 과정, 공동 프로젝트 제작 과정 제외
- 2) '24년-'25년 신규분야 개척 지원 사업 중 '연구제작, 기술개발' 지원 보조사업자 한정  
\* 전문단체 육성 지원 대상 보조사업자 지원 불가
- 3) 후속지원 기선정자 지원 불가

- (지원규모) 15건 내외 선정, 건별 30백만원 정액지원
- (지원조건 및 지원 세부내용)

구분	주요내용
공모 및 선정 (2월~3월)	<p>&lt;지원대상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(지원자격) '23-'25년 아트코리아랩 2개 사업(수퍼 테스트베드, 신규분야 개척 지원)참여자 <b>*대상사업 :</b> ① '23-25 수퍼 테스트베드 지원(예비예술인 과정 및 공동 프로젝트 과정 제외), ② '24-25 신규분야 개척 지원 중 '연구제작, 기술개발' ('23-24 전문단체 육성 지원 제외)</li><li><b>*기준 참여 형태 유지 필수 :</b> 대표자 및 팀원 변동 불가, 개인 참여는 개인으로만 지원 가능</li><li>· (지원유형) 후속 지원을 통한 고도화를 통해 <u>완작제작</u>이 가능한 경우</li><li><b>*23-25년도 진행 과정 시 실험, 제작했던 프로젝트의 완작 제작 우선 선발</b></li><li>*신규 프로젝트인 경우, 기존 프로젝트와의 연관성 필수 기입</li></ul>

<b>사업운영 (3월~10월, 8개월)</b>	<p><b>&lt;지원항목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직접경비</b> : 건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원금 30백만원(정액지원)</li> <li><b>멘토링 및 네트워킹</b> : '26년 수퍼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멘토링, 네트워킹 지원</li> <li><b>인프라</b> : 아트코리아랩 공간(미디어랩, 이머시브사운드스튜디오, 쇼룸 등) 및 장비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실험과 안정적인 창작 환경 지원(공간 사용 협의 필요)</li> </ul>
<b>공유, 확산 (10월-11월)</b>	<p><b>&lt;프로젝트 목표설정(필수)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프로젝트 성과물(작품)의 형태는 자유이며 내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으나, 후속지원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(정성, 정량)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필수</li> </ul> <p><b>&lt;공유·확산 계획 수립(필수)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아트코리아랩 외부공간에서 현장공유(필수, 연 1회 이상, 10월-11월 중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트코리아랩 공간 혹은 외부 공간에서의 과정/성과 공유를 통해 유통 확대</li> <li>공연, 전시, 렉처 등 형태는 무관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방식으로 공유 가능</li> </ul> </li> <li><b>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 또는 과정공유회 등 요청시 참여 필수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6년 11월-12월 중 / 아트코리아랩</li> <li>그 외 센터요청에 따른 홍보, 아카이빙 등의 활동에도 적극적인 협력 필수</li> </ul> </li> <li><b>이외 적극적인 대외적 공유, 확산 등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 수립 필요</b></li> </ul>

### ○ (지원시 유의사항)

- 대표자 사례비는 책정이 가능하나, 명확한 역할을 적시하여야 하며, 과도한 편성은 지양(10% 이내)
- 지원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지원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함
- 지원사업을 완료(정산확정 및 잔액반납)하지 못한 자는 신청할 수 없고, 지원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되므로 사업의 선정-집행-정산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

## □ 신청 및 접수안내

### ○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6. 2. 27.(금) 15:00까지

\* 접수 마감일(26.2.27.(금) 15:00)까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5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

### ○ (접수방법 및 제출서류)

- 접수방법 :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(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을 통해 신청 (\*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- 제출서류 \*모든 첨부파일은 PDF 파일로 제출 必

구분	제출서류	제출방법
1	이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 예산서 1부	-  <b>필수</b> 이나라도움 시스템에 직접 작성
2	공모신청서	지정서식 (서명날인 필수)  <b>필수</b>
3	(개인) 신분증 사본(뒤 7자리 비공개 처리 후 제출) (단체)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(법인)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국세/지방세/4대보험* 완납증명서 *2대 보험만 가입된 경우, 2대보험 완납증명서로 대체	-  <b>필수</b> 이나라도움 시스템에 붙임파일로 첨부 제출
4	포트폴리오	-  <b>필수</b>

### ○ (접수시 주의사항)

- 이나라도움 이용시 회원가입 필수, 공인인증서 필요
-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(시스템 사용, 장애 신고 등)은 이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(1670-9595) 문의
- 마감 당일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사전제출 권장
- 예술가/단체가 간이 또는 과세사업자인 경우, 지원금은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
-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화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수혜 불가
- 그 외 지자체, 문화재단, 민간재원 등 타 재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 지원금 사용계획 제출

## □ 심사 및 선정

### ○ (심의방법)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심의(서류) 및 2차 심의(발표)

구분	내용
행정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서류 검토, 서류 미비 등 결격 지원서 제외</li> </ul>
1차 서류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사내용 : 지원신청서 및 프로젝트 계획서 등 심사</li> <li>○ 심사방법 : 서류심사</li> <li>○ 심사위원 : 외부 전문가 5인 위촉</li> <li>○ 선정범위 : 최종 선정자의 <b>2배수 내외</b> 선정 *접수결과 지원 규모의 3배수 미만일 경우, 서류심의를 겸한 발표심의로 대체 가능</li> </ul>
2차 발표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사내용 : 사업계획서와 제출 자료 기반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</li> <li>○ 심사방법 : 발표 심의 <b>*PT 자료 준비</b></li> <li>○ 심사위원 : 외부 전문가 5인 위촉</li> <li>○ 선정범위 : 15건 내외 선정(예비 3건)            *수퍼 테스트베드 지원 80%, 신규분야 개척지원 20% 내외 배분 선정, 적격자가 없는 경우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          *예비 3건을 선별하여,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 인원으로 충원함            *적격자가 없을 시, 선정자가 없을 수 있음         </li> </ul>
최종 결과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종 선정결과 발표(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)</li> </ul>

## □ 심사기준

구분	심사지표	배점	세부 심사 내용 (착안사항)
지표1	전년도 과업과의 연속성/연계성	1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과정, 실험 수행과의 연관성, 연속성이 높은가</li> <li>• 기존작품 혹은 실험 과정의 보완 계획이 적절한가</li> </ul>
지표2	수행역량	1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표 및 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</li> <li>• 사업계획과 인력 구성이 적절한가</li> <li>• 예산의 규모 및 예산 집행계획이 구체적인가</li> </ul>
지표3	구체성, 차별성	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융합(예술, 기술 측면) 제작의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이 있는가</li> <li>• 프로젝트가 예술기술 융합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</li> </ul>
지표4	완성도, 발전기대도	4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프로젝트의 적절한 목표(정성, 정량)를 설정하였는가</li> <li>• 후속지원 시 완성도 있는 완작 제작이 가능한 수준인가</li> <li>• 후속 유통계획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였는가</li> </ul>

\* 동점자 발생 시, 배점이 높은 지표 순(지표4>지표3>지표2>지표1)으로 고득점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함

## □ 추진 일정

모집공고 및 접수	행정검토	1차 심의	2차 심의	결과공고
공고일 ~2.27.(금) 15:00까지	3월 1주	3월 2주	3월 3주	3월 3주
이나라 도움 접수	서류 미비 신청자격 검토	서류심의 (2배수 선정)	발표심의 (15건 내외 선정)	최종선정 결과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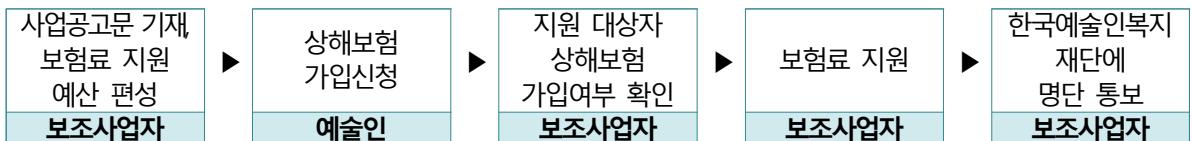
\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### ○ (선정자 의무사항)

-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시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CI, 아트코리아랩 BI 등 지원사업 관련 기관 표기 필수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의무 교육 이수 및 서약서 제출
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  - \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
  - \* 실적보고서 및 성과물의 경우 추후 자료집, 아카이빙 등의 책자/영상/온라인 등에 제작 및 업로드(공개) 될 수 있음
- 이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필수, 정산 실적 보고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선정자는 사업과정 및 지원금 지급과 정산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센터의 안내 및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, 사업 수행 시 센터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
- 선정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(서면계약 체결 의무사항), 「예술인 권리보장법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거나, 「예술인 권리보장법」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된 계약내용을 미이행할 경우,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자는 필요시 참여예술인 대상 산재 또는 상해보험의 가입을 확인하고,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음 \*보험료는 지원예산으로 책정 가능

#### 예술인 대상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(민간보험) 가입 안내 \*추후 세부사항 재안내

- (개요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124조에 따라,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(프리랜서 등) 중·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며, 기간이 짧은 경우, 상해보험으로 대체 운영
- (절차) 지원 예산 편성 시 보험료 필수 편성(보험등급 4등급 기준 권장)



※ **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타 보조사업 등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보험금 책정 불가**

## □ 지원제한 대상

- 국비, 지자체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및 소속된 자
- 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\*」이 명시하는 선정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

\* 제13조 제4항

1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2.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 보조금 집행 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
- 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 제외)
-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(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

\*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

## □ 유의사항

### ○ (예산편성 단계)

- **(간이)과세사업자의 경우,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하며 부가세액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음**
  - \* 부가세액은 사업비 외 자부담액으로 집행하며 예산집행 내역에 포함하지 않음
  - \* 고유번호증/면세사업자는 매입부가세액 보조사업비 편성/집행 가능
-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
#### <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>

-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
- 자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(교육기기, 장비, 가구, 도서 구입 등), 시설 부대비, 수선비, 전화·인터넷 설비, 홈페이지 개발비, 도메인비 등
-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, 해당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(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 19조 등)

### ○ (선정 단계)

-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(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) 및 이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신청 시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지원금의 교부, 집행, 정산의 의무는 신청단체에 있음

### ○ (사업수행 단계)

-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공모 선정 후 지원금 교부, 집행, 정산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됨
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금 집행은 이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,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 집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음
  -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은 불인정 될 수 있음
  - 사업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, 지원선정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함
  -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  - **사업선정 이후 의무사항 불이행, 고의 혹은 과실 및 기타 사정으로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**
  - 사업점검 및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 설문 요청 시 사업 참여자 전원 필수 응답 제출해야 함
  -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, 결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\* (21.1.6.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)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
- \*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

○ (사업종료 후)

- 회계검사 및 정산·실적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(센터 지정양식) 제출
- 사업종료 후 5년간 이력·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,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

※ 신청서 제출 전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며,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결과 발표방법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아트코리아랩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단체 개별 공지

문의

- (공모 문의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융합팀
  - (이메일) [stb@gokams.or.kr](mailto:stb@gokams.or.kr)
  - (유선문의) 02-2098-2964
- ※ 전화 문의는 평일(월~금) 10:00~17:00 중 가능(점심시간 12:00-13:00)
- (e나라도움 문의)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